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75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2. 30. ~ 2022. 1. 13.(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주)비엠비	180111-0704***	0178200274100000296	6,936,000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55번길
2	김대훈	1981.01.21.	0178200274100000350	6,458,400	부산 남구 고동골로4번길
3	김형수	1981.10.26.	0178200274100004472	13,381,200	경남 거제시 수양로
4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337	17,841,6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5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339	9,558,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6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346	30,957,3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7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311	9,558,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8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299	53,1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9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294	52,02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10	이태영	1985.04.09.	0178200274100004471	13,275,000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313번길
11	장윤식	1965.06.12.	0178200274100000361	5,192,500	부산 수영구 수영로
12	정총명	1987.03.31.	0178200274100000295	6,637,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3	(주)짱네트웍스	180111-0998***	0178200274100007281 0178200274100007280	2,944,66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101번길
14	(주)한국디지털	180111-0688***	0178200274100000292	6,592,500	부산 수영구 망미로7번길
15	하상재	1993.02.20.	0178200274100004478	6,637,500	부산 연제구 과정로265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6	서영빈	1985.06.06.	0178200274100001046	13,275,000	경북 경산시 동지로 21 길
17	유일용	1962.02.08.	0178200274100001045	23,01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91 번길
18	(주)고려에이앤디	170111-0445***	0178200274100001043	5,310,000	대구 동구 입석로
19	강준욱	1979.12.06.	0178200274100001032	12,222,000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20	티앤케이개발	170111-0574***	0178200274100001031	3,492,0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1	김현기	1977.03.01.	0178200274100001132	1,009,800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22	이현우	1964.11.01.	0178200274100001016	3,955,0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18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KCA빌딩)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